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16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1.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2	34	2,370.5	1	391.3	도로결정 86.9㎡	A-2	34	2,370.5	1	391.3	도로결정 86.9㎡
			2	167.1					2	167.1	
			3	308.9					3	308.9	
			4-1	189.5					4-1	184.9	
			4-2	184.9					4-2	189.5	
			4-3	268.8					4-3	268.8	
			4-4	190.5					4-4	190.5	
			4-5	190.2					4-5	190.2	
			5-1	234.9					5-1	234.9	
			5-2	244.4					5-2	244.4	

○ 단독주택용지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34	4-1	획지 분할	획지선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4-2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